의안번호	제 673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3

제출연월일 : 2021. 4.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20. 12. 20.「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 2021. 6. 23.)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

나. 일부 미비사항(띄어쓰기, 법률표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9.~ 2021. 3. 12., 20일간):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 ---------- ---------- 13명-------- ---------- ---------- ----.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 9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② ---------- ----------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	1. ---------- 9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3. ----------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 법 제18조의2제3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5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